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1237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나22537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123799 판결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B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환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9. 9. 6.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85,713,393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서 배당된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85,713,393원 부분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2019. 9. 6.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85,713,393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서 배당된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주식회사 F과 대출금 100,0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F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9. 9. 6.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25,1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20. 9. 1.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104,500,000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6,931,1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잔여 배당액이 없어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0. 3. 6.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20073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배당기일 후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116,931,161원이 공탁되자 2020. 12. 22.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204148호로 피고의 위 공탁금지금청구권에 대한 출급청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20. 6. 2. 기준 85,713,19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지 배당요구신청서 상 채권의 액수는 원금을 기준으로 합계 334,724,573원(= 원고 83,100,000원 + 피고 127,653,057원 + G조합 111,452,900원 + H 주식회사 5,742,820원 + I 주식회사 6,775,7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9. 6. 당시 D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채권자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본소), 47113(병합), 47120(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매각대금의 액수와 위 인정사실 마항 기재 채무의 액수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F이 물품대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개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F의 물품대금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D라는 자연인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 D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1) 주식회사의 재산, 채무는 그 대표이사의 재산, 채무와 구별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에도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를 통하여 D가 주식회사 F의 단순한 대표이사가 아니라 D의 개인 재산을 주식회사 F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주식회사 F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단순한 대표이사가 아닌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재산과 주식회사의 재산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기도 하므로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F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장기간 누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9. 9. 6. 기준 93,307,272원에 이르렀던 사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F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D의 경제적 형편 내지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사업용 자산이나 투자 자산이 아니라 D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로부터 약 6개월 전에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각 사정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로서는 이를 통하여 D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자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24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고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위 기초사실 라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는 85,713,3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인정사실 라항 기재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 중 85,713,393원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출급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범위가 85,713,393원에 한정되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